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869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4260	김예지의원	2024. 9. 25.	2024. 11. 14.
지원에 관한 법률	6887	김예지의원	2024. 12. 24.	2025. 2. 18.
일부개정법률안	6984	소병훈의원	2024. 12. 26.	2025. 2. 18.

-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2. 2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2.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2. 21.) 비용추계 생략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군·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원 없이는 경제적 착취 등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같은 취약성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부모 역시 자신들의 고령 등으로 발달장애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시점 또는 사후에 발달장애 자녀에게 상속시킬 재산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등).
- 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 조의4 신설).
- 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1조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4(재산관리 지원) ①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일상생활유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한다)와 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발달장애인등의 소유재산을 이전받아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계약기재사항, 재산 관리·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 계약해지 절차 및 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제2항 전단 중 "한다"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 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의 규모 및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수 있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을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 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 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 ----제33조제2항 및 제3항----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 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재산관리 지원) ① 국 <신 설> 가는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일 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발달장 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 달장애인등"이라 한다)와 계약 을 통하여 약정한 발달장애인 등의 소유재산을 이전받아 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 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 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생 략)

-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 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 •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시ㆍ도지사는 필요성을 고 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 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 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 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 용절차,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 위, 계약기재사항, 재산 관리· 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 계약해지 절차 및 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2)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하고. 시장ㆍ 군수 · 구청장은 지역발달장애 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 치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③ 시・도지사는 지역의 규모 및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 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 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 ⑦ (생 략) 제41조(위임·위탁) ① (생 략) 제
 -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 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 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 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u>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u>
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
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u>
- .
(5) ~ (7) (형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1141조(위임·위탁) ① (현행과
Ⅱ41조(위임·위탁) ① (현행과
Ⅱ41조(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141조(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Ⅱ41조(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141조(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u><신 설></u>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방」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수 있다.